

# (사) 한국지반공학회 지부 운영 규정

2016년 8월 22일 제정

2016년 10월 10일 개정

2017년 5월 11일 개정

2019년 6월 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 목적) 지부는 소속 회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지부 특성을 고려한 학술핵심역량 강화 및 지부 회원 기술발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부 설치) 지부설치신청서(별지 1) 및 회원 동의서(별지 2)의 서식을 이용하여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원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지부 설치를 요청한다. 단, 국외 지부의 경우 예외로 한다. 회장은 지부 설치 안건을 본회의 이사회에 상정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 지부 설치를 결정한다.

제4조(지부 사업) 지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② 회원 증강 및 신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 ③ 학술연구발표, 강연회 등 주관
- ④ 공동 학술연구용역 프로젝트 개발
- ⑤ 수탁연구, 기술지도, 자문 및 평가 활동 운영
- 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교육 교재 편찬, 보급
- ⑦ 건설기술자 재교육에 관한 사항
- ⑧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발 및 관련 활동
- ⑨ 지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활동
- ⑩ 기타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지부 운영) 각 지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연간 계획을 본회의 1월 이사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실행한다. 각 지부는 자체의 운영 세칙을 둘 수 있다. 단, 운영세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지부 운영위원) 각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 1인, 부지부장 및 간사 약간명을 포함한 적정 인원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지부장, 간사, 운영위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7조(지부장 임명) 지부장 임명은 지부 회원의 총의로 추천한 회원을 이사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지부장 임기)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지부 재정) 지부의 재정은 본회가 제공하는 계좌에서 관리한다. 지부에서는 본회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한다.

제10조(지부 평가) 본회에서는 지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부평가위원회는 위원장(본회의 대외협력담당부회장), 간사(기획전담이사), 위원(감사 1인, 총무·사무국담당부회장, 총무전담이사, 학술연구용역전담이사)으로 구성한다. 평가는 차년도 2월 중에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3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자료집에 수록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개폐한다.

(별지1)

## 한국지반공학회 지부 설립 신청서

대표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E-mail	
전화번호	자택	(        )	-	
	핸드폰	(        )	-	
주소	자택	Ⓢ		
	우편물수령지	Ⓢ		※자택주소와 다를 때 기재

상기 본인은 (사)한국지반공학회 \_\_\_\_\_ 지부를 설립하고자  
정관 제3조 및 지부 운영 규정 제3조에 의거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  
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귀중

